



입시업무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2-2-21
제정일자	2024.4.15.
개정일자	
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, 직원, 조교(행정조교 포함)(이하 ‘교직원’이라 한다.)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자) 입학전형업무수당(이하‘수당’이라 한다.)의 지급대상자는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및 외부 입학전형 관련자로 한다.

제3조(지급대상자 업무) 수당의 지급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업무
2. 입학전형 관련 출제 및 심사, 평가 업무
3. 입학전형 시험 관리 및 지원 업무
4. 기타 입학관리 부서장이 인정한 입학전형 관리 업무

제4조(지급기준)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‘입시업무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’에 정한 바에 따르나,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시행세칙은 교육부의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의 지급재원) 수당의 지급재원은 입학전형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교비에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